

[독립이사 독립성/다양성 가이드라인]

- 독립이사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며, 이 밖에도 글로벌 규정을 준용하거나 보다 엄격한 독립이사 선임 요건을 수립하여 독립이사 후보자의 독립성 여부를 확인토록 함.
- 독립이사가 다음 사항을 충족하면 독립적이라고 판단하며, 이 밖에도 독립이사가 당사와 어떠한 중대한 관계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함.
 - 최근 5년간 당사 임직원으로 고용되지 않은 경우
 -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임직원이 아닌 경우 (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1호)
 - 독립이사의 직계가족이 최근 3년간 당사 또는 자회사의 임원이 아닌 경우
 - 독립이사 업무에 따른 보수를 제외하고 최근 3년 이내 본인 또는 가족이 12개월 동안 당사로부터 12만불 상당 이상의 보상을 받지 않은 경우
 - 최근 3년간 당사의 외부 감사기관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
 - 당사 또는 당사 경영진의 고문 또는 컨설턴트가 아닌 경우
 - 당사와 주된 법률자문·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의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이 아닌 경우 (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사목)
 -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당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당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 총액의 10% 이상인 법인의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이 아닌 경우 (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가목)
 - 최근 사업연도 중에 당사와 법인 매출총액의 10%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이 아닌 경우 (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나목)
 -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
- 이사회는 이사회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, 산업계, 금융계, 학계, 법조계, 회계분야 또는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독립이사들로 구성토록 함. (정관 제31조) 특히, 이사회 구성에 있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립이사 후보자의 성별, 연령, 국적, 전문역량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토록 함